

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)

○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

○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및 보육시설”을 “및 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“보육시설”이란”을 ““어린이집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”을 “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0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11조 앞의 제3장의 제목 “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”을 “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공립보육시설 (이하 “보육시설””을 “공립어린이집(이하 ”

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  
제12조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각각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“보육시설”을 각각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)”을 “(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1. 어린이집 원장

제17조제2항 중 “보육시설의 종사자가”를 “보육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1조제1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1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보육종사자”를 “보육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

4.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

제26조제1항제8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